

사후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04301 서울 용산구 청파로320-28 1층 아랫마을 전화 : 02-778-4017 E-mail : antipvertykr@gmail.com 홈페이지 : antipovety.kr

수신	언론사	참조	사회부
발신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문의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010-8166-0811)
일자	2026년 7월 24일(금)		
제목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를 열자] 2026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는 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6월 2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자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7월 20일에는 제79차 회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었던 6월 29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중생보위 위원들을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초대했습니다. (*요구안 후첨)
4.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빈곤층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통로조차 없습니다. 수급자 한 명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절차는 가난한 시민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범위 확대 △중생보위 개방을 요구하며 가난한 시민의 진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언했지만 불평

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올해 노인 빈곤율이 하락하여 처음으로 30%대에 안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24.8%나 높아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심합니다.

6. 현실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응하여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빈곤문제에 대응해온 활동가들과 수급 당사자들이 직접 제도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힘’의 박용수 회원이 맡았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중생보위 개방, 재정확대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7.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끝 -

*별첨1) 행사 개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생보위 말고 민생보위를 열자] 2026 민중생활보장위원회

- ◇ 일시: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 ◇ 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위원장: 박용수 ('모이면 힘이 된다!'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 발언자

생계급여소위	박영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추경진 ('모이면 힘이 된다!'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의료급여소위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주거급여소위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박영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부양의무자기준	오영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생보위 개방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재정확대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퍼포먼스

***별첨2) 발언문**

박영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논란이 되는 상황 자체가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로 확인됩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는 연도와 최신 실측치 간에 3년의 시차가 있어서 그 극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 중위소득은 객관적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자료와 전혀 무관한 수치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로 산정하도록 한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중위소득이 나타내는 상대적 소득 수준에 맞추려고 했던 법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6년에 걸쳐 당시 12%에 이르던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 그 격차는 30%로 벌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5,400,964원이었는데 현실 중위소득은 7,000,525원이었습니다.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느라 격차 해소를 위해 정한 산정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80여개 복지급여 기준에 활용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격차 해소의 약속은 무슨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며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6년 동안 국민을 속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실제 통계치를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추경진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힘> 회원인 추경진입니다. 현장에 참석해 직접 발언해야 마땅하나, 갑작스럽게 수술이 잡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더 잘 계획해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작년과 올해에 월평균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생필품비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식비로 월평균 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급비 외에 추가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받는 임금이 수급비 외에 85만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장애인 1인 가구 수급자보다 두 배의 수입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하나마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추가로 40만원을 받기 위해 한 달 내내 일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들에게 4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만약 제가 생계급여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생활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밖에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밥을 사면 나도 한 번 사거나 최소한 커피나 빵이라도 사야 하는데, 생계급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곳에도 돈이 없어서 마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생계급여만으로 한 달을 살라는 건 사회와 철저히 단절한 채 혼자 살다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30만원~40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오르는 보증금과 같이 예측 가능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또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고치거나 가구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병원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도 MRI 비용으로 40만원을 지출했고,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래 몇 년 사이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이나 슈퍼에 가도 편하게 물건을 고를 수 없어, 물건을 담았다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8천원이었던 국밥이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인상 수준은 물가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수급자들의 마음과 실제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일말의 고민이나 하고 있을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가 최소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올해는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재정론을 앞세우며 수급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던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고, 가난해도 누구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급여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수록 치료를 포기 하는 부정의를 끝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험과 평가로부터 정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소위에서는 실제 수급 당사자와 과거 수급 경험자, 그리고 의료급여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과 거리상담 기반의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 의료급여에서 애초에 탈락한 경우, 그리고 부양가족의 소득변동에 따라 수급이 중단된 경우 등 다양한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부양의무자의 소득 확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사람들을 의료급여의 보장성 바깥으로 내몰았습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이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에 ‘있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7.7%에 달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비용 장벽’이 없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경제적 장벽으로 인한 ‘치료 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보장제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비급여’,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비급여와 간병비의 부담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도 발생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그 영향은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치과 영역’의 미충족 의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보호자(간병인)를 요구하는 병원 앞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이용을 주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일당 13만원~15만원에 달하는 간병인 비용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의료급여수급자가 감내하기란 너무도 혹독한 일입니다. 운이 좋게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자를 요구하는 병원 앞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 이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건강불평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치과 영역의 보장성 확대,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 체계로서 ‘비급여, 간병인, 사보험 부담없는 안심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요구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두가지 단편적인 정책 수단을 도입하

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자는 손실 부담없이 치료를 선택하고, 환자는 비용부담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대안적 의료현장을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급여제도의 목표는 '재정절감'이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에 있습니다. 재정위기담론에서 벗어나 의료급여제도 본래의 목표와 취지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수급자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요구,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그리고 안심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재설 (동자동사랑방)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자동에 사는 차재설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수급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정부는 우리한테 뭘 주면서,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 뜻대로 정해서, 자기네 방식대로 줍니다. 그러니 주는 것마다 우리 사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보십시오.

아픈 사람한테 그 카드 줘 봐야 써먹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그 카드 들고 어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이렇게는 안 만들었을 겁니다.

현찰로 통장에 넣어 주면 각자 자기 형편대로 씁니다. 그런데 왜 현금으로는 못 줍니까. 수급자는 돈을 쥐어 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정부가 뭘 주려거든 자기네 뜻대로만 하지 말고, 쓰는 사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도 똑같습니다.

생계급여 따로, 주거급여 따로. 나라가 용도를 다 정해서 갈라 주니, 주거급여는 우리 손을 거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방세로 집주인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집주인은 다 쓰러져 가는 방 하나 고쳐 주지도 않으면서,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당했습니다.

가르지 말고 한꺼번에 우리 손에 쥐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돈을 쥐고 있어야, 집주인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는 어떻습니까.

암 환자, 폐가 안 좋은 사람들, 약값 본인부담은 그대로 남겨 둡니다. 새로 나온 신약 한번 써 보려면 한 달에 큰돈이 들어가는데, 수급자 형편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쓰지도 못하는 카드는 주면서, 사람 살리는 약값은 왜 보장을 안 해 줍니까.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정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 살림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수급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을 닫아걸고, 회의록도 안 남깁니다.

물어보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수급자를 그 자리에 앉히십시오. 쓰는 사람한테 묻고 정해야, 그게 사람 사는 제도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중생보위 위원님들, 진짜 주거권을 보장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주거위기 가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부유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가난한 이웃들의 주거권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서울 소규모 단칸방 월세가 평균 60~70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에, 법이 정한 숫자와 기준에 가로막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나왔습니다.

1. 약속했던 '중위소득 50%'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정부는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기준선은 여전히 48%에 묶여 있습니다. 최근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50대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단 몇만 원의 소득이 더 잡혔다는 이유로 주거급여에서 전격 탈락했습니다. 기계적인 기준선 초과로 당장 이번 달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다시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주거급여 인정 범위에 '관리비 및 광열비'를 즉각 포함하십시오.

현행 주거급여는 오직 '순수 월세'만 보조할 뿐,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관리비와 광열비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한 어르신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십여만 원의 관리비를 내면 식비조차 남지 않아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또 다른 50대 주민은 월세 외에 12만 원의 관리비를 낼 길이 없어 임차료와 관리비가 밀려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임대에 당첨되어도 높은 관리비 때문에 식비를 줄이고 고립되다 결국 쫓겨나는 것이 서글픈 실상입니다.

3.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현실화하십시오.

자가 가구 수급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는 일률적인 금액 한도 때문에 도배나 장판만 겨우 바꾸는 '땀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40~48% 구간 가구는 수선비 지원금이 삭감되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극빈층에 가까운 이들에게 이는 사실상 "집수리를 포기하라"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복지는 탁상 위 서류나 통계표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장의 절박한 삶을 반영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안녕하세요, 청년 세입자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가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민생보위에 참석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빈곤 가구가 최소한의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48%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째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책정 기준이 혁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서민이 부담하는 주거비는 크게 올랐습니다. 2025년 서울을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33㎡ 이하의 소형 주택의 평균 월세는 약 7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2인 가구 소득의 약 34.7%, 3인 가구 소득의 약 27% 수준입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차지하면 주거

비 과부담으로 봅니다. 선정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기준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밀실 회의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근거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정부가 약속한 기준 상향을 왜 미루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이런 기준이 당사자의 목소리와 공개적인 검증 없이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즉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 60%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분리지급에 대한 요건 역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분리거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도농복합광역시의 사례,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 90분 초과 등으로 인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시 안에서 독립해서 실제로 별도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청년 세입자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독립 여부와 주거비 부담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 구역의 경계뿐만으로 설정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실제 생계와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주거 빈곤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예산에 사람을 맞추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맞춰 예산과 기준을 설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람에게 집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달린 회의실 안에서 최소보장의 수준을 결정 하지 말고, 당사자와 시민에게 논의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거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감당 가능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영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규탄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마련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닙니다. 국가가 외면해 온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스스로 증언하는 자리이며, 달린 회의실에서 결정되는 복지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으니 국가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형제자매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이 제도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의료비,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통비 등 비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추가비용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장애인을 독립된 시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장애인조차 부모의 재산을 기준으로 생존권을 판단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가족이 책임져라." 이 한마디는 수 많은 장애인들을 빈곤 속에 가두었고, 부모에게 평생 미안함을 안겨주었으며, 가족 전체를 함께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장애인은 가족의 부양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장애인의 생존권은 부모의 재산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의료권은 자녀의 소득으로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판단해야 할 것은 가족의 통장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입니다.

국가는 가족의 책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빈곤 당사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과 의료를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포스터에는 "복지 사각지대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민생보위를 열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는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보장 확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개방.〉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떨어진 요구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빈곤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비공개로 운영되는 한 당사자의 목소리는 계속 배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십시오. 빈곤 당사자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십시오. 국민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십시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장애는 가족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닙니다. 생존권은 가족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외칩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생존을 맡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장애인에게 가족에게 손을 벌리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국가는 국민의 생존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존재 이유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이유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빈곤사회연대와 모든 가난한 시민들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누구도 가족 때문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감시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충분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아 왔습니다.

첫째, 중생보위는 회의자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위원회 관련 운영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위원회와는 차이가 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5조는 제1항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항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회의록 작성 및 열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하여 회의 공개 원칙을 밝히고 구체적인 방청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각 위원회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음.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의 경우 사회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함에도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은 불투명한 상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나열된 작성 의무 존재 회의 종류 중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라도 중생보위의 회의 내용은 성실하게 작성,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보위나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은 모두 최종 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처지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의 몇퍼센트 인상 정도에 그칩니다. 지난 76차 중생보위 회의부터 주요 발언이 정리되었으나 이 주요 발언만으로는 몇명이 발언을 한 것인지, 시간순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의견 분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현행 산정방식이 끝나게 되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TF가 구성되어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둘째, 중생보위는 시민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빈곤 당사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중생보위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6인과 전문가와 공익대표인 위촉직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정부위원회에는 지역가입자 대표 등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중생보위에는 수급당사자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위촉직 명단을 보면 전문가와 공익대표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를 대표한 공익 몫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교수와 연구자가 전문가 몫이 아닌 공익의 대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폐쇄적 운영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빈곤은 개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배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위원들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공된 형태의 공개가 아니라 발언 전체를 녹취한 자료를 공개해야 각 위원들의 책임성이 담보되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또한 수급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상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늘 열린 '민생보위'에서 복지예산 현실화와 재정 확대에 대해 발언을 맡은 변호사 김상헌입니다.

법률가로서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법 문언만 뜯어봐서는 이 제도가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을 하나 꼽자면 단연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중간값에 기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빈곤의 기준선을 국가의 '예산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 통계'에 묶어두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명확한 통계적 개념은 더 이상 통계적 개념이 아니라 조작적 개념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1인 가구 실질 중위소득은 290만 9천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은 239만 2천 원입니다. 무려 51만 7천 원, 비율로는 약 21.6%에 달하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더 이상 통계적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21.6%의 격차를 메우고 복지 예산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한 번 복지 지출을 늘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실제 통계 수준으로 올리면 국가 재정에 감당할 수 없는 영구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통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빈곤층에게 없던 혜택을 새롭게 얹어달라는 ‘복지의 증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예산을 핑계로 임의로 깎아내고 지연시켜 온 수치를, 법률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되돌려 놓는 ‘기준의 정상화’ 작업일 뿐입니다.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영구적 복지 증대’ 요구라고 매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마저 지금은 힘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역대 최대 수준의 세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의 정상화를 할 적기입니다.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인프라를 짓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는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민생보위’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청합니다. 법률의 취지 따라 기준중위소득을 즉각 정상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복지예산 및 재정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3) 사진

사진 더 보기, 다운로드: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photo&document_srl=1283002







이재명정부는 늘어가는 불평등, 빈곤문제 방치말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지금 당장 나서라

- | | |
|------------|--|
| 1)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지금 즉시 이행이 필요하다 |
| 2) 기준중위소득 | 6년간의 중위소득 격차 해소 실패, 누가 책임질 것인가? |
| 3) 의료급여 |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보편적 의료보장과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다 |
| 4) 주거급여 | 현금지원을 넘어 실제 주거권 보장으로 주거급여 확대하라 |
| 5) 중생보위공개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민주적 질서 확립하라 |

20260629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순자산이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60억을 넘는 초부유층이 금융시장의 활황에 따라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의 초부유층은 1년 사이 36% 이상 급증해 가장 빠르게 초부유층이 늘어난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표가 보편적인 삶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청년실업률은 팬데믹 수준인 7% 이상으로 치솟았고, 저소득 가구의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는 제자리걸음, 아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는 '전 국민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복지기준에 반영하겠다'며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으나 통계상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가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는 6년간의 계획을 통해 당시 총 12%가량이던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80여개 복지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이토록 낮은 것은 전 국민 복지 기준선을 침몰시키는 일이자, 정부와 제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지 내년이면 10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으나 부양의무자기준은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잔존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선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가족관계를 낱알이 밝혀야 하는 수치가 복지신청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9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 이대로는 못 참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 빈곤층의 삶을 반영한 의료급여를 만듭시다.

올해는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재정론을 앞세우며 수급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던 시도를 이제는 중단하고, 가난해도 누구든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료급여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급여,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수록 치료를 포기하는 부정의를 끝냅시다.

– 관리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로 주거급여를 실질화합시다.

주거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사람에 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여전히 낮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남아있습니다. 관리비 등 주거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고 실질적으로 월세 역할을 하는 항목을 주거급여로 포함시켜 수급자의 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단지 월세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상담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 7월 24일, <민생보위>를 열겠습니다.

달힌 문 안에서 열리는 회의에 어떤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수급자 한명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절차가 어떻게 가난한 시민을 대변합니까. 우리는 다음 요구안을 전달하는 한편, 7월 24일 <민생보위>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알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알리는 이 자리에 중생보위 위원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꼭 자리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 민생보위>에 초대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24일 오전10시 30분

– 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20-28 (청파동 1가) 1층 아랫마을

– 문의: antipovertykr@gmail.com 010-8166-0811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내년이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 10년. 부양의무자기준 아직도 잔존 중
- 33만명으로 추산(생계급여 수급, 의료급여 비수급)되는 핵심 사각지대는 지금 당장 포괄 가능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선언. 보건복지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음.
- 현재 급여별 부양의무자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됨.

급여	상황	비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구의 연소득이 1억 3천, 재산이 12억 이상 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가 고자산, 고소득자라 할 지라도 부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잔존
의료급여	잔존 (2024년부터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와 같은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 가장 심각
주거급여	2018년 완전폐지	-
교육급여	2015년 완전 폐지	-

- 2026년 5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1,922,765명, 의료급여는 1,591,361명.¹⁾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경제적 사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인구는 최소 33만 명임.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빈곤층은 66만 명²⁾.
- 주지하듯,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에서마저 배제된 이들의 실제 가족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함. 특히 의료급여로부터 밀려난 경우 병원 이용을 포기하게 됨. 사각지대 국민들이 빼앗기는 권리가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잔존은 심각한 문제.
- 2021년~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은 2만 4157명이었음. 탈락자 월 평균 소득은 44만3420원에 불과함³⁾. 이들을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하

1) www.bokjiro.go.kr

2) 보건복지부, 2023.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p10

3)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분석자료

는 것은 국가의 부재임.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권고⁴⁾).

- 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실패하였는가? 재정 절감 압박이 가장 큰 이유. 이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에 빈곤층이 없었기 때문임. 빈곤층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빈곤이 심화되고, 나아가 그 가족까지 빈곤에 처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폐지’라는 이름 뒤에서 9년이 지나도록 폐지를 완수하지 않고 있음. 내년이면 약속 10년이 되는 해임. 10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

4) <UN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7

2.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 지난 6년간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이를 좁히겠다고 했으나 격차는 오히려 확대
- 추가 증가율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추고, 고무줄 산식을 반복한 결과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겠다’던 정책 취지 소멸됨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년간의 격차 해소 실패를 해명하고 위법한 현재 상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법제6조의2)하여 결정함. 이렇게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이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정해진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법제2조7)에 부합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 기준중위소득과 여러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실제 중위소득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음. 2025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39.2만 원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 값은 290.9만 원,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중위 값은 332.9만 원임.
 - 더욱 문제인 것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이미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실제 중위소득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임. 당시 약 12%로 추정했던 둘 사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6년간의 계획을 세웠으나 6년이 지난 지금 격차는 21% 이상으로 오히려 확대되었음.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비교(2018~2025년)

(단위: 만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67.2	170.7	175.7	182.8	194.5	207.8	222.8	239.2
	4인가구	451.9	461.4	474.9	487.6	512.1	540.1	573.0	609.8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가구	187.8	196.2	204.2	214.8	229.2	253.5	276.6	290.9
	4인가구	478.6	500.0	520.4	547.5	584.1	646.2	705.1	741.7
소득분배지표	1인가구	230.2	239.4	247.3	251.5	267.2	292.3	320.9	332.9
	4인가구	460.3	478.8	494.5	503.0	534.3	584.7	641.8	665.8

주: 전년도 소득기준임

- 이는 몇 가지 구조적 원인⁵⁾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맛에 맞춰 매년 고무줄 산식을 반복한 결과임. 2020년 중생보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치 평균 증가율(기본증가율)에 격차 해소를 위한

증가율(추가 증가율)을 더해 이듬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중생보위는 스스로 만든 이 원칙을 단 한 차례이행 했을 뿐임.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실제 증가율과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비교

연도	가금복 3년 평균 실제 증가율	적용증가율			
		기본증가율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	총 증가율
		기본증가율	근거		
2021	4.62	1.0	-	1.66	2.68
2022	4.32	3.02	3년 평균 증가율의 70%	1.94	5.02
2023	3.57	3.57	3년 평균 증가율	1.83	5.47
2024	4.34	3.47	3년 평균 증가율의 80%	2.53	6.09
2025	6.29	2.77	물가상승률 3년 평균	3.55	6.42
2026	9.19	2.0	물가상승률 3년 평균	4.42	6.51

- 이런 고무줄 산식의 첫 번째 피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임. 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급여 차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준 매달 17만 2천원.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격차로 발생하는 생계급여 차이

(단위: 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준중위소득(A)	1인가구	50.2	51.2	52.7	54.8	58.3	62.3	71.3
	4인가구	135.6	138.4	142.5	146.3	153.6	162.0	183.4
가계금융복지조사(B)	1인가구	56.3	58.9	61.3	64.4	68.8	76.0	88.5
	4인가구	143.6	150.0	156.1	164.2	175.2	193.8	225.6
생계급여 차이(A-B)	1인가구	-6.2	-7.6	-8.5	-9.6	-10.4	-13.7	-17.2
	4인가구	-8.0	-11.6	-13.7	-18.0	-21.6	-31.8	-42.3

- 기준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수급비뿐만 아니라 수급자 선정기준이자 80여개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됨. 현실과 다르게 과소결정된 기준중위소득으로 인해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 자체가 하향했으며, 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수급자조차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역시 약 81만가구 일 것으로 추정함.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격차로 발생하는 생계급여 비수급빈곤층 규모

(단위: 가구)

구분	합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A)	885,429	555,305	249,720	41,798	21,994	12,813	1,841	1,959
가계금융복지조사(B)	1,704,027	1,080,891	460,817	91,019	46,500	19,922	2,348	2,531
비수급빈곤층 규모(A-B)	-818,598	-525,586	-211,096	-49,222	-24,506	-7,109	-507	-572

주: 소득인정액이 아닌 소득만을 기준으로 추정

- 소득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의 도입은 빈곤정책에 전 국민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예산에 따른 임의의 빈곤층 복지제도 축소를 막고자 함이었음.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소득수준을 무시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으로 인해 제도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중위소득 32% 이하 비수급빈곤층은 약 8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됨. 기준중위소득이 단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5) 먼저, 12%의 격차를 연도별로 약 2%씩 추가해 해소한다는 가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 더불어 이렇게 결정한 기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인상률을 더하는 방식이라, 이전의 잘못된 결과가 반복해서 누적될 수 밖에 없음.

도 선정기준이 아니라 80여개 다양한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훨씬 클 것임.

-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분명히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을 활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 옴.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개선 대책을 밝혀야 함.

3. 의료급여 개선과 비급여, 보호자(간병인), 사보험 부담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수급권자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해야
-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좋은 공공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더 나은 의료급여의 미래를 열어갈 때

-
-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너무 많이 병원을 이용한다며 비용 부담을 늘리거나 외래 방문 일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꾸준히 도입해왔음. 그러나 수급자들의 현실은 정반대임. 의료급여에도 불구하고 수급가구의 미충족 의료요구는 27.8%에 달하고, 치료포기 사유가 진료비 부담인 경우는 87.1%(김태완 외, 2023)⁶⁾.

- 의료급여의 목표는 ‘재정절감’이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에 있음.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이 아니라 재정 절감에 목표를 둔 계획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험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다음과 같은 의료급여 요구안을 제출함.

1)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가 시급함. 더불어 인구의 3%에도 달하지 못하는 낮은 수급률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의미. 이를 포괄하기 위한 선정기준 현실화가 필요함.
- 약간의 소득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면 가족이나 본인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생계활동을 포기하는 수급자들의 상황은 ‘선택’이 아니라 ‘제도의 함정’임. 2015년 폐지한 이행급여 재도입으로 수급탈락 이후에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②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비롯한 비수급빈곤층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게 선정기준 현실화

③ 이행급여 재도입

2)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 수급자들의 비용의식을 강화한다는 허울아래 도입된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원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들의 급여 일수 관리 중심이 아니라 실제 질병과 회복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 범위와 인력 확충이 필요함.

6)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023)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의료비 부담은 다른 가구에 비해 낮으나 치료포기 경험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제외한 다른 저소득 가구보다 높고, 그 이유가 진료비 부담인 경우도 다른 집단과 유사하게 높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황이 다른 가구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치료부담이 적으나 꼭 필요한 치료가 있을 때조차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일단 치료비를 낸 뒤 연말에 정산 받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상한선 이후에는 납부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퇴원 후 발생하는 장기입원 공제 때문에 생계급여가 삭감 돼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 현재 장기입원공제는 1인 가구 기준 369.469원으로 급여의 45%에 달함.

- 대부분 비급여 진료로 이뤄져있어 치료가 어려운 치과진료의 보장성을 확대해 ‘치아 불평등’을 해소해야 함.

- ① 본인부담금, 선택병의원제도 폐지 및 지원강화
- ②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이 아니라 자동 납부 면제로 변경
- ③ 퇴원 후 장기입원 공제 금지
- ④ 치과 보장성 강화

3) 비급여, 보호자(간병인), 사보험 부담없는 안심 의료급여를 위한 공공병원 시범사업

- 수급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비급여, 보호자(간병인)을 요구하는 병원 앞에서 증폭함. 이 때문에 부족한 수급비를 아껴 사보험마저 가입하는 모습은 실패한 공공의료 현실의 단면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두가지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함. ‘비급여, 보호자(간병인), 사보험 부담없는 안심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공급자는 손실 부담없이 치료를 선택하고, 환자는 비용부담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4.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즉시 상향 및 60%까지 단계적 상향 계획 발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완화 (동일 시·군 내에서 분리 독립하는 청년 가구원도 보장)
- 관리비·공과금을 주거급여 인정비용 범주에 포함해 수급자의 매월 실제 부담을 지급해야 함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과 함께 제정된 주거급여는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도의 성격과 효과로는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택 수당’과 같은 성격을 가짐.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 아래 주거급여는 수당으로서의 수급자 숫자가 적고, 공공부조로서는 급여 안정성과 수준이 부족한 문제를 갖고 있음.

-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는 임대료 보조 장치로 작동할 뿐,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음.

- 우리는 주거급여가 실제 수급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다음의 변화를 요구함.

1) 주거급여 보장범위의 확대로 사각지대 문제 개선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 그러나 현행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도 이후 기준중위소득의 48%에 머물러 있음. 정부는 2023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선정기준은 3년째 제자리. 그 사이에 월세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해 선정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가구들의 주거비 부담이 극심해 진 실정임.

- 주거급여 1급지인 서울시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0평(33㎡)이하인 비아파트 소규모 주택들의 2025년 평균 월세는 약 69.8만원으로, 이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 2인가구 소득의 34.7%, 3인 가구 소득의 27%에 달함. 일반적으로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차지하면 주거비 과부담으로 평가하는데, 선정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해 제도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급등한 주거비 현실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함. 정부는 기존에 약속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상향하는 안을 즉시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선정기준의 확대와 더불어 현재의 까다로운 지급 기준의 완화도 필요함. 예를 들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원가족이 수급가구일 경우, 해당 가구에서 독립할 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 가구의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동일 시·군 내에서 분리 독립하는 수급가구 청년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수급가구 청년의 노동, 자립, 주거 현실을 반영하여 원가족이 수급가구라면 동일 시·군 내에 거주하더라도 주거급여 지급을 보장받도록 분리지급 인정요건 완화가 필요함. 나아가 현행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 상태의 독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실제 생계와 주거 실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① 주거급여 인정 비용 범주의 현실을 반영한 확대 (실제 임차료에 관리비 등 포함)

- 현재 주거급여는 실제 주거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리비, 광열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25년 수급가구 가계부조사에 참여한 20가구 중 주거급여로 임대료·관리비·광열비를 모두 총당하는 가구는 1가구 뿐이었음. 월평균 관리비와 수도광열비를 합하면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가 넘는 가구는 8가구.
- 특히 영구임대, 재개발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수급자의 경우 월세는 낮아지지만 관리비가 인상되는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생활상의 저하를 겪게 됨. 이는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지인 만남과 같은 외부활동을 줄이는 결과로 돌아오는데, 더 극심한 경우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에 놓임.
-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통해 주거급여 한도액을 실시하고 있음. 한도액 내에서 고정적인 관리비와 수도광열비 등의 비용을 보충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주거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 현재 국토위원회는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음. 그러나 법 개정없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먼저 결정·이행하기를 촉구함.

② 안정적인 주거지로의 이전 지원을 주거급여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보해야

- 폭발적으로 오르는 민간임대차시장의 임대료와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적절한 주거지를 보장하는 것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일임을 보여줌. 조사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사는 경우는 1급지 서울을 기준으로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25.26%와 27.05%였으나,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이 비율은 42.26%(2015년)으로 증가함.

〈주거급여 수급자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단위: %)

구분	전체 수급자		공공임대 제외(민간임대) 거주수급자
	2015년	2019년*	2015년
전체	19.33	-	28.71
1급지	25.26	27.05	42.26
2급지	21.90	26.24	33.53
3급지	16.38	20.77	26.39
4급지	16.47	25.93	21.63

출처: 1) 『주거급여 개편 제도의 평가 체계 구축 및 효과 분석 연구』 244~245쪽, 국토교통부, 2015.

2) 2019년, LH 내부자료를 인용한 통계, 김성연(2020), 114쪽 참고.

- 현재 주거급여 체계 내에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수해위험 (반) 지하나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적정 거처에 살고 있어도,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어도 ‘더 나은 곳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 ‘갈 곳이 있는지’ 묻는 사람이 없음. LH공사의 주택조사원이 주택조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조사에 머무를 뿐 주거안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가진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비정적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의 이주 안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행 주택조사는 실제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과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넘어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권리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적극적 경로를 만들어가야 함. 이를 통해 ①주거빈곤층의 임대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②주택 상향이동을 상담·지원하고 ③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필요조건을 조사 ④공공주택과 주택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주거안정 보장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선순환이 될 것.
- 유념할 것은 단지 주택의 열악함만을 들어 주택 개선, 이주를 주거 상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열악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생활해왔거나 이웃·동료·지지 관계가 있는 경우 이주 결정은 어렵거나 실익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함.

③ 수선유지급여, 기간과 금액 한도가 아니라 실제 적절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 현행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음. 현행 지원 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에 맞춰 일부만 보수하고, 몇 년이 지나면 보수한 부분마저 노후화해 절대적 부족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됨.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 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금액 (도서지역 10% 가산)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기능·설비(창호, 난방공사, 단열 등)	구조,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 노후도 점수에 따른 금액과 기간 제한이 아니라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가구마다 계획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단순 노후화가 아니라 침수 방지 시설, 단열·창호 개선(그린 리모델링) 등 기후위기 대응 항목을 필수 수선 범위에 포함해야 함.

④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지역 세분화

- 현재 ‘기준 임대료’는 실제 시장의 전·월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대도시 및 수도권에 임대료 상승폭에 비해 급여액 인상률이 매년 턱없이 낮아 상대적 수준 또한 하락 중.
- 최근 월세가 급등하는 추세에 발맞춰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함. 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4개 급지 구분(현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을 현실화하여, 임대료가 높은 대도시에서도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급지별 기준임대료를 실제 지역별 전·월세 시세와 연동하여 실효성 있게 인상해야 함. 또 현재 4개 급지로 분류된 지역 구분을 주거비 수준이 급등한 특정 거점 도시를 반영해 세분화해야 함.

5.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밀실회의
 - 방청권 보장, 속기록 작성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야
-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음. 중생보위는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록을 모두 최종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있으며, 속기록은 의결 이후에도 남기지 않음.
- 이는 국가의 주요 회의와 비교할 때 무척 폐쇄적이고 이례적인 수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23개 회의는 속기록, 녹음기록 생산의무가 있음. 차관급 이상이 구성원이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의 등 23개 회의 역시 속기록 작성이 의무. 이와 비교할 때 전 국민의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의 모든 결정과정이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폐쇄적 운영 덕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단 한 번도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지킨 적이 없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다 민주적인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으나, 지금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비)민주적 절차’로 전락해버렸음.
- 민주적 거버넌스는 민주적 정부 운영의 필수 요소임. 모든 정부 위원회 가운데 가장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는 첫 정부가 되길 바람.
- 이를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자료와 내용을 사전에 공표하고, 각 부처는 의견과 함께 근거를 제시해야 함. 방청권을 보장하고, 속기록을 남기고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할 것을 요구함.